



\* 특별법의 주요내용: 외국의료기관 개설 기준 및 절차, 외국면허소지자의 종사허가 및 자격조건 규정

○ 또한, 선진화된 의료시스템을 활용하여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관광산업을 적극 육성

- 외국병원이 겸업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의 확대\*와 해외환자를 대상으로 한 유인·알선 허용을 통해 외국 환자 및 보호자의 유치를 확대를 추진할 것임

\* 보양온천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등

□ 경제자유구역간 경쟁체제 도입 및 자율성 제고

(운영경비 차등지원비율 상향조정(전체운영비의 40% ⇒ 100%)

(구역청장의 인사권 강화 등 자율성 제고유도)

○ 금년 4월말 추가지정된 3곳을 비롯 총 6곳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중앙의 재정지원을, 투자유치실적·예산집행 등에 기초한 성과평가에 따라 차등화 ⇒ 경제자유구역청간 “창의경쟁유도”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개발 가속화

- 기존 운영비 지원액 전체의 40%한도내에서만 차등지원하여 오던 것을 향후 운영비 지원액 전체를 대상으로 차등지원

- 개발실적에 따라 구역지정 해제·확대 및 사업계획 축소·확대도 추진

○ 외자유치분야에서의 민간 전문가 확대를 통한 전문화와 함께 구역청장의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및 계약직직원의 임용권을 청장에게 위임하는 등 인사권강화 유도

□ 경제자유구역법의 특별법으로의 전환 검토

○ 현행법하에서는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상 행정 절차를 일반지역과 동일하게 거쳐야 하고, 규제를 배제하는 특례 사항도 그리 많지 않음

(예) 법문상으로는 실시계획 승인시 부처협의를 일괄적으로 진행하고 각종 인·허가사항을 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환경, 문화재 관련 사항 등을 건건이 개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해야 하고 또한 협의시에도 일반지역과 동일한 허가기준이 적용됨

○ “제한된 지역에 대해 선도적 규제완화 실험”이라는 경제자유구역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특별법으로 전환 추진

- 개발계획에 따라 자동으로 수립·변경되는 계획을 확대하고 사업승인과 동시에 처리되는 인·허가 사항을 확대

- 출입국관리법, 임대주택법 등에 대한 특례를 경제자유구역법에 직접 도입하는 등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특례 사항도 확대할 방침

□ 외국인 투자자 및 근로자의 출입국 절차 대폭 간소화  
(사증 발급 신청 절차 간소화, 입국 전용심사대 설치)

○ 경제자유구역내 외투기업 종사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예: 지식경제부 장관)의 고용추천서 등이 없어도 경제자유구역청장의 확인을 통해 사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사증 발급 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자 및 근로자의 신속한 출입국과 투자기업의 안정된 고용관계 도모

\* 특례 적용 사증 범위 : E-1(교수), E-3(연구), E-5(전문직업), E-7(특정활동; 외투기업 종사자 등) 등

○ 경제자유구역 투자자 입국시 전용심사대를 설치하여 출입국 심사 대기시간을 단축(금년내 실시예정)